의 안 번 호	200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30.(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9. 30.(금)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0. 17.(월)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영환)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과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에 맞게 위원수를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조문 정비(안 제1조~제10조)

다.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옥범)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조례에서 정한 민간위원과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에 맞게 위원수를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2003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9. 30.(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9. 30.(금)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0. 17.(월)

2. 제안설명 요지(정책사업단장 민병률)

가. 제안이유

민선8기 구정목표인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의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정책자문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의 세부사항 등을 정비하여 기존 정책자문단의 기능 강화와 내실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울산광역시 중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자문단 명칭 변경: 정책자문단의 명칭을 종갓집 정책자문단으로 변경(안 제1조~제2조)

○ 자문단 위원 수 확대와 위원 구성분야 구체화(안 제3조)

○ 분과위원회 설치와 운영의 자율성·책임성 확보(안 제6조)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총괄 간사 변경(안 제8조)

○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7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3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